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298
----------	---------

제출연월일 : 2001. 4.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제안이유

○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업시행자로하여금 위탁 재활용하게 하거나 자체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에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기 삭제된 부분을 정비함(안 제13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중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100세대이상)등”을 “감량의무사업장 등”으로 한다.

제13조중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을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략)</p> <p>②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하게 하거나 자체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u>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후 처리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p> <p>①~② (생략)</p> <p>③음식물쓰레기 <u>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100세대이상)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13조제2항, 영 제6조의2 및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음식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p> <p>④~⑤ (생략)</p>	<p>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u>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감량의무사업장등</u> ----- ----- ----- ----- ----- ----- -----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정안
<p>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는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에 의한다.</p>	<p>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7조제2항 및 제9조4항 ----- ----- ----- -----</p>

<별표 1>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내에 물이 빠지는 체·망사형 등의 수집 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집하여 물기를 제거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 - 소금성분이많은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이쑤시개·호일등 재활용이 안되는 이물질등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 패각류, 통뼈, 유독성물질, 복어내장, 배추뿌리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u>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u>